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74호

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15호(2017.12.29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443호(2019.08.26.), 제2020-522호(2020.07.22.) 및 제2022-763호(2022.12.21.)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산업단지 명칭(변경없음)

-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3.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(변경)

- 개발기간(변경) : (기정) 2017년 ~ 2023년  
(변경) 2017년 ~ 2025년 12월
- 개발방법(변경없음) : 공영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8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나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다. 기반시설계획(변경)

- 1) 교통시설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- 2) 공간시설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- 3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- 4) 방재시설(변경없음) : 계재생략

5) 환경기초시설(변경)

가) 오·폐수처리계획(변경)

- (기정)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(D200mm)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(Q=275,000m<sup>3</sup>/일)에서 처리
- (변경)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(D200mm, L=0.73km)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(Q=275,000m<sup>3</sup>/일)에서 처리
- (기정)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 후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(D200mm)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(Q=275,000m<sup>3</sup>/일)에서 처리
- (변경)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하여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(D200mm, L=0.73km)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(Q=275,000m<sup>3</sup>/일)에서 처리

구 분	합 계	생활오수	공업폐수
오·폐수 발생량 (변경없음)	1,409.8m <sup>3</sup> /일	1,326.8m <sup>3</sup> /일	83.0m <sup>3</sup> /일

나) 하수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) 폐기물처리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라) 폐기물처리시설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9. 재원조달계획(변경)

가. 추정사업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. 연차별 투자계획(변경)

구 분	금액 (억원)	연차별 계획									
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
기정	계	2,219	3	681	648	184	196	347	160	-	-
	용지비	1,459	1	599	640	141	60	18	-	-	-
	조성비	760	2	82	8	43	136	329	160	-	-
변경	계	2,219	3	681	648	184	196	347	81	45	34
	용지비	1,459	1	599	640	141	60	18	-	-	-
	조성비	760	2	82	8	43	136	329	81	45	34

다.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1. 에너지사용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2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지구단위계획을 포함)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(변경)

가.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. 도시·군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라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마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2)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)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5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6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가)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) 물절약에 관한 사항(변경)

■ 기정

구분	계 획 내 용
빗물이용시설 설치	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
절수설비 설치	• 물절약을 위해 상수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한다.
중수도 설치	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

■ 변경

구분	계 획 내 용
빗물이용시설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</li> <li>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li> </ul>
절수설비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절약을 위해 상수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권장한다.</li> </ul>
중수도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.</li> <li>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이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

바.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사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) : 게재생략

13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14.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(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변경없음)

가. 지형도면 작성 조서

○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

지역·지구 등 명칭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-6번지 일원	233,307	-	233,307	

나.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(변경없음, 게재생략)

15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(032-440-4672), 남동구청 미래전략과(032-453-5686)에 비치합니다.